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8호 2021. 10. 28.(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예천군 규칙 제1297호)

고 시

- 감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79호)

공 고

-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49호)
-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52호)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56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57호)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58호)
-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59호)
-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26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97호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5.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6.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예천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과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방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 기준에 적합한 인근 급수를 이용하여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행사장의 경우 건축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전통시장 내 작업장을 둘 경우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 · 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FRP) ·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 · 증기 · 살균제 등으로 소독 ·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가목)

가. 영업장

-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나목)

가. 영업장

-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식품의 조리에서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 1)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시기관에서 영업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라목)

가. 영업장

- 1) 영업장은 전시설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3)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 1)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영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예천세계활축제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지역축제장, 행사장 내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식품위생영업을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함(제3조)
- 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제4조)
- 다. 지역 행사, 전시시설, 건설공사현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제5조)

예천군 고시 제2021 - 79호

감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감천면 및 용문면 일원에 지정된 감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예천 감천, 용문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용문면 일원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구분	기정(m ²)	변 경(m ²)	변경후(m ²)	비 고
감천 상수원보호구역	1,025,430	감) 1,025,430	0	전체해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125,200	감) 125,200	0	

4.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예천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유
 - 예천, 감천, 용문정수장 통합운영에 따른 취수장 폐쇄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6. 지형도면 도서 : 도면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련도서 열람
 - 관련자료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54-650-6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정비하여 재난관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안 제3조)

- “문경소방서장” 을 “예천소방서장” 으로 변경
- “예천교육장” 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으로 변경
- “안전관리담당” 을 “안전관리팀장” 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2, 팩스 : 054-650-6159
- 전자우편(이메일) : tkznfk2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담당” 을 “안전관리팀장” 으로 한다.

3. 예천소방서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3. <u>문경소방서장</u>	3. <u>예천소방서장</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u>예천교육장</u>	6. <u>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안전관리담당</u> 이 된다.	③ ----- ----- -- <u>안전관리팀장</u> -----.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대학교수, 전문가, 안전 교육을 받은 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함
-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함
-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 부대표로 위촉함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 수행함
-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전보안관 해촉 시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함

마.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포상할 수 있음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hsrh32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마땅한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안 제9조제1항)
 - 현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개정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ltals15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전화: 054-650-6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u>만 65세 이상</u> 의 <u>사람</u> 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 ----- ----- <u>사람</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마땅한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안 제3조)
 - 현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개정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ltals15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전화: 054-650-6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을 “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 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 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u>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u> 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 ----- ----- 문 ----- -----. ----- -----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에 대한 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신청, 수행, 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 용어 정의

나. 보조금 예산의 편성(안 제5조)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단가 및 공통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마련

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안 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규정(당초 보조금심의위원회 승계)

라. 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 공모의 기간 및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마.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의 수행(안 제15조 ~ 안 제24조)

-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자기부담금 집행 기준 규정
- 군의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실적보고 검사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안 제25조 ~ 안 제27조)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지원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관리 및 부기등기

사. 신고포상금(안 제28조 ~ 안 제34조)

-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등 기준 마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ilmare85@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

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보조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군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등)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따른다)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7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한 조건서를 제15조에 따른 교부결정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교부방법) ① 군수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정한 경우
- ③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하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 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③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⑨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자기부담금) 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② 사업규모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자기부담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군수는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군수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에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25조(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 40년
2. 부동산(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 20년
3. 선박 및 항공기 : 12년
4. 그 밖의 중요재산 : 「내용연수」 별표1, 별표2 내용연수표 준용

⑥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장 신고포상금

제28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고인 등은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피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 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및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금교부결정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할 것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조 건

1.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및 규정, 교부 목적과 내용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7.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나.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다.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라.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한다)
 - 마.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9. 보조사업자는 선금을 신청할 경우 그 선금의 집행계획이 명시된 선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선금의 집행내역과 정산에 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 간의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가.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다. 담보의 제공
11.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서류 및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이
한
부

예 천 군 수

직인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예천군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④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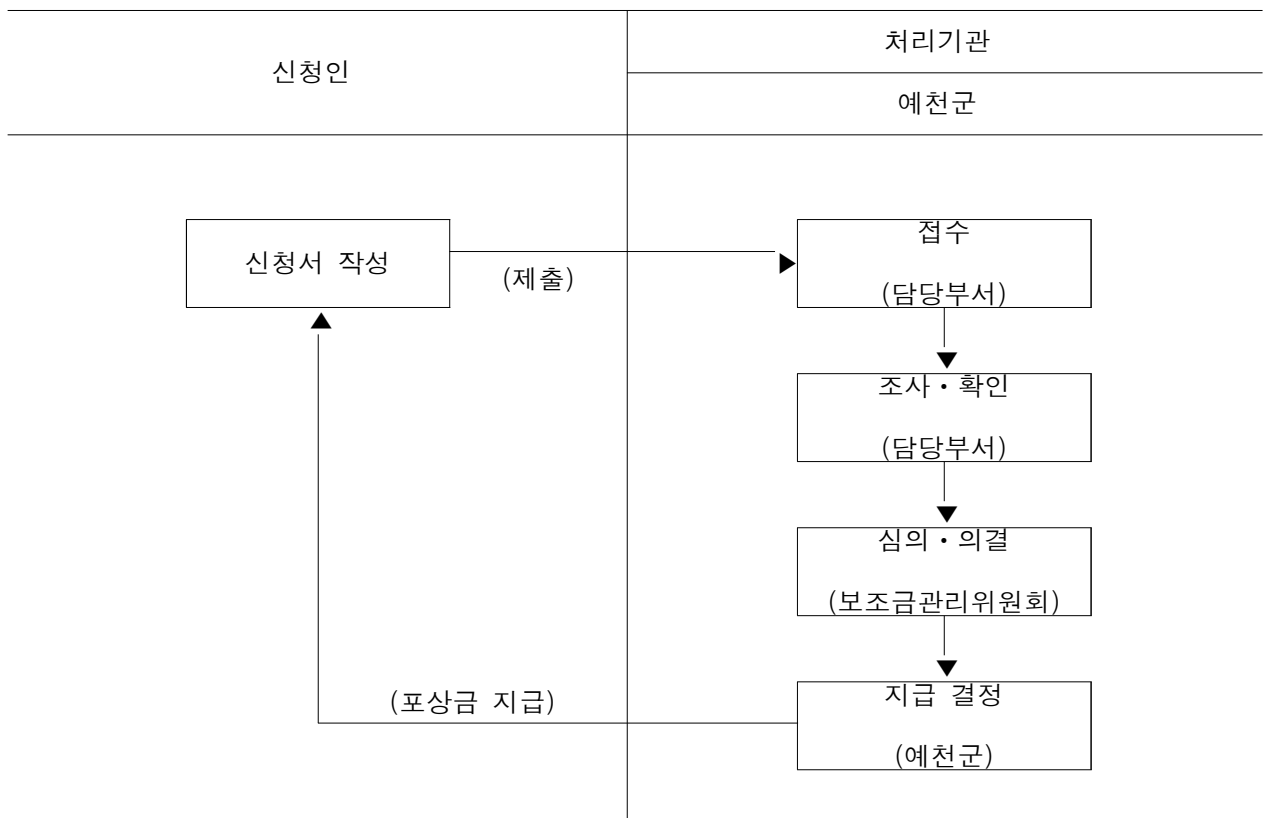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 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접수담당 : (인)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접수담당 : (인)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ilmare85@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성과금의 신청, 심사 및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여 예산성과금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통·폐합(안 제5조)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다. 예산성과금의 신청, 심사 및 지급대상 확대(안 제14조제3호·제4호)

○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ilmare85@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천군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를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규정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타 지방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을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54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를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를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4.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건비”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u> 를 말한다.	2. ----- ----- -----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	3. -----

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
다.

4. 5.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예
천군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② 제안규정 기타 다른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
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기타 지방공무원 보수관
계 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4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지
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 영 제4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
경비---.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예천
군과 그 소속기관에 -----
---.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
령-----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영 제
50조-----

이 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5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자

3.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자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54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 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 근무경
험이 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
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
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
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삭 제>

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
달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⑦ (생략)

제1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3조제4항
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지출절약 또
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자를
말하며, “직접 기여한 자”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
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
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예산팀
장-----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

-----.

1. -----

----- 공무원

2. -----

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의 <u>조</u> 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u><신 설></u> <u><신 설></u>	----- ----- <u>조</u> <u>직</u>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u>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u> <u>자</u> 4.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 <u>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u> <u>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u>
--	--